



기업과 대화가 되는 공정거래제도 운영

성기석

LG전선 기계CU 법제팀장

“**세** 계경제질서는 이제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경이 사라지고, 무한경쟁이 이루어지는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였다. 기업은 이제부터 정부의 지원이나 보호정책 없이 세계의 일류기업들과 치열한 생존경쟁을 하여야 한다.”

지난 시대에 이루어진 한국기업의 고속성장은 정부가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조정을 강화하는 정부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에 힘입어 질적·양적으로 급신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인플레심리가 만연되고 시장기능이 왜곡된 가운데 기업들은 이윤극대화의 원칙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되는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윤리는 생각할 수도 없게 되었다. 소중한 많은 것들이 수단화 되고 도구화 되어갔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자명한 상식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런 것이 자본주의의 당연한 현상이라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성장의一面에 드러난 지나친 정부주도에 따른 시장기능의 왜곡과 독과점 현상의 심화에 대한 반성으로 새로운 정책이 요구되던 차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케 되었다. 이 법은 정부와 시장경제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기업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체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된 지 16년이 넘어서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각은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를 하나의 정부규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다. 국제화시대를 맞아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기업의 과제앞에서 공정거래정책의 강화는 기업들의 장애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것은 자칫 기업활동을 극도로 제약하고 위축되게 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낳고 있을 정도이다.

현재의 국제경쟁하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대두되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인데,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의 변신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의 공정거래정책도 민간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행정편의적이 아닌 기업을 고객으로 보는 서비스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런 시대상황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기업 역시 “이윤극대화”라는 기업목적의 원론적 자세를 지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객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이제 기업은 “적절한 이윤”을 확보하여 기업의 유지와 존속이라는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고 또 고객으로부터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여야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점적인 위치로 고객에게 무언가를 강요할 수 있는 기업이라 할 지라도 고객으로부터 그 존재가치를 부정받게 되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때문에 기업은 이제 주주, 고객, 협력회사 그리고 지역사회 등 기업을 둘러싼 모든 부분의 이익을 적절

히 조화시키기 위한 경영이념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구시대의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한국경제상황 중에서 습득한 모든 관행과 경영해법을 냉철히 돌아봐야 하는 이런 시기이므로 공정거래법의 정당성은 더욱 그 의미를 갖게 된다. 공정거래법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이라는 시장경제원리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결국 공정거래법이 요구하는 것도 고객을 향한 기업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이 공정거래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기업문화와 체질을 이룬다는 것은 오히려 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새로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임을 심각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수출시장에서 부딪쳐야 했던 유수한 해외 기업들을 내수시장에서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우리의 고객마저도 한국기업을 외면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을 바라보는 한국기업의 자세를 더욱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필연적이고, 또 그만큼이나 강력해져가는 공정거래법규의 적용에 아쉬운 점이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특정사안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함에 있어 합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위법으로 적용하는 횡일적인 모습을 가끔씩 체험하게 된다.

어떤 법규가 그 근거를 갖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그 법규의 시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가져야 할 것이다. 법의 강제성이라는 국민의 부담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법이 가진 의미, 즉 법이 의도하는 정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의 정당성에 관해서는 이에 못지 않은 중요한 것으로 법적 합리성과 법적 안정성이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아니 법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후자에서 말한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명확한 지침을 줄 수 없는 법은 행위의 지침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법이 현실속에서 합리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언】 재 공정거래법규를 바라보고 있는 기업의 담당자들이 때때로 느끼는 것이 이와 같은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무엇인가가 기업활동에 대하여 끊임없이 규제하고 제한하고는 있는데, 막상 이를 쳐다보게 되면 이는 어느새 추상적인 의미와 취지만을 가진 이상한 형태의 것으로 변해버릴 때가 있는 것이다. 이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적절한 자문을 구할 곳을 찾는 것도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다양한 사업별 특성과 시장관행이 존재하는 기업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을 가진 이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규의 시행에 대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만나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모임의 형태를 만들었으면 한다. 공정거래법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법의 적용에 있어 합리성과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이 한자리에서 만나자는 것이다. 해당산업에 대하여 가장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 어디인가? 바로 기업이다. 또한 어느 누구보다도 현재 시행되는 공정거래법규의 합리적인 보완을 원하지 않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법규의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판단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역시 기업이 그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때로는 이러한 기업과 대등하고 협력자적인 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위 같은 만남의 기회를 통하여 기업의 산업별·시장별 특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정부의 담당자에게 현실적으로 전달될 것이고 정부의 각종 시책과 방향의 효과적인 전달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기업과 정부의 자세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상호작용을 먼저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문화는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같은 관행의 정착은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공정거래관리는 사후의 벌칙강화란 형태에서 문제의 사전예방측면의 강화라는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전예방 측면의 강화는 바로 그 자체를 우리가 공정거래문화의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현상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